

한진칼 보상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11월 8일

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진칼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이사보수 및 경영진 평가보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 5 조 (임기 및 해임)

- 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임기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.
- ③ 위원의 해임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조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이사회는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.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 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늦어도 회의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회의의 연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를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 - 1. 등기이사 보상체계 수립
 - 2.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 내의 등기이사 보상집행 승인
 - 3.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중 위원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
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이사회 통지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을 통지 받은 이사가 그 사항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12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3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칙]

1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4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